

## 전기제품 PL 사례

### 소형믹서 결합으로 인한 피해배상 요구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99. 12. 10 피청구인이 제조한 소형 믹서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200. 1. 5 청구인의 아들(4세)이 싱크대 위에 있던 믹서를 내려 전원을 연결하여 작동시키는 순간 컵이 깨지면서 튀어 나가고 돌아가는 칼날에 오른손 중지와 약지가 절단되고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두 손가락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청구인에게 동 사고가 이 건 믹서의 안전장치 미비로 발생하였으므로 치료비 등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피청구인은 사용자 과실이라며 배상을 거부함.

#### 2. 당사자 주장

#####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믹서의 조립 상태가 완전하지 않으면 전원을 연결하여도 작동되지 않아야 하나 이 건 믹서는 칼날부와 불완전하게 조립된 상태에서 작동하여 동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제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치료비 등을 배상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

##### 2)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가정 내의 어린이 안전은 보호자가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을 어린이 손이 닿는 곳에 방치한 청구인의 과실로 동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3.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4. 4. 29일까지 금 4,000,000원을 지급한다.

#### 4. 조정결정이유

##### 1) 피청구인의 배상책임

이 건 믹서는 분쇄할 내용물이 든 컵을 칼날과 결합해 본체에 올려 놓고 조인 다음 별도의 작동 스위치 없이 바로 전원을 연결하면 작동되는 제품으로서 작동 시 칼날이 고속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컵과 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칼날부분 작동할 경우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1998. 11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이 건 소형믹서와 작동방법이 유사한 제품에 의해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가 빈번 발

생함에 따라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 믹서와 같이 용기가 칼날부에 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본체에 칼날부만 맞춰 기우고 누르면 칼날이 돌아가는 제품의 경우 "매우 위험한" 제품으로 평가되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리콜하도록 산업자원부에 건의, 해당 제품을 생산한 제조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하였으며, 칼날이 노출된 상태에서는 제품이 작동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전기용품기술기준"에 반영된바 있음. 따라서 이 건 사고는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에 동제품을 놓아둔 청구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동제품의 안전장치 미비로 인해 성인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제품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제조상의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할 것임.

## 2) 배상금액

청구인의 장모씨(4세)는 이 건 사고로 인해 오른손 중지와 약지가 절단되어 봉합수술을 하였으나 향후(약10년 후) 뼈 제거 수술(중지) 및 휘어진 손가락을 바로 잡는 수술(약지)을 해야 하며, 약지는 성장 판이 손상되어 향후 변형을 유발할 수 있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인 바, 중지와 약지의 봉합수술 및 치료에 소요된 치료비 2,000,000원과 중지와 약지의 추가 수술에 대한 예상 치료비 1,770,000원을 합산한 금 3,770,000원 중 청구인의 과실 부분을 상계한 금 2,000,000원에 동 사고 발생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및 향후 오른손 장애에 따른 사용상 불편함에 대한 배상금 2,000,000원을 합산한 금액 4,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 5. 조정결과 : 성립

### 옥매트 장시간 켜놓아 불 제조사·사용자 절반의 책임

전기용품을 켜놓은 채 외출해 화재가 났다면 사용자와 제조사에 각각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 이지현 판사는 14일 정모씨가 옥매트를 제조한 L의료기를 상대로 낸 3천300여만원의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금액의 50%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옥매트는 정상적으로 연결됐음에도 과열돼 발화현상이 발생한 이상 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조사는 화재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그러나 "제조사가 사용설명서에서 온도조절 버튼을 잘 조절하고 이불 속에 넣어 사용치 말 것을 고지했는데도 원고가 전원도 뽑지 않고 평소보다 높은 4단(1 7단까지 존재)으로 둔 채 상당시간 방치하는 등 주의사항 이행을 소홀히 했으므로 절반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03년 12월13일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법당에서 옥매트를 4단으로 켜놓은 채 5시간 이상 외출해 법당에서 불이 나 3천3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자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 세라믹팬히터로부터라고 생각되는 화재로 주택 전소

### 1. 상담내용

1년전 1월 통신판매로 가슴기가 부착된 세라믹 히터를 구입해 2월부터 3월 상순까지 사용함. 그 후 12월 10일부터 다시 사용을 시작하였으나 12일 20:00시경 2층에서 "탕"이라는 소리가 나 남편이 보러 가니까, 2층 방의 선반으로부터 불길 이 솟아 나오고 있었음. 불길이 거세어 소화기로는 진화하지 못해 2층 건물 17평의 집이 전소됨. 익일, 경찰과 소방서에서 나와 검증하였으나 세라믹팬히터는 가지고 가지 않았음. 현장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음. 보상을 받고 싶음. 또한, 화재·家財 보험에는 들어 있음. 소비생활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였더니 PL센터를 안내해 주었음.

### 2. 경위

당 센터는 피해액의 산정과 화재·家財 보험의 절차를 밟을 것을 상담자에게 전하였음. 당 센터는 수일 후 제조자와 동행하여 현장·현물의 확인과 상황의 청취를 위해 방문하였음. 화재의 원인이라 생각되는 방은 완전히 불에 타버렸으나, 팬히터가 놓여있던 다다미는 남아 있었음. 또 팬히터는 옆방과 천장을 통해 연장코드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하지만 연장코드 의 잔해는 볼 수 없었음. 신고 후 소방서가 팬히터를 인수해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현물의 확인을 위해 소방서를 방문함. 팬히터의 상부는 수지가 녹고 그을려 굳어져 있었으나, 수지로 만든 밑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었음. 3개월 후 소방서에서는 팬히터로부터의 발화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인불명이라고 조사결과를 발표. 그후 상담자의 양해를 얻어 제조사에 의한 원인조사를 행함.

### 3. 원인

메이커의 조사에서는 현물의 배선코드 및 회로에 용융 흔적이 없고, 내부에 그을음의 부착도 적어 발화의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음. 또한, 용융된 수지에 유리조각 및 종이 등이 들어가 있어 외부의 열에 의해 녹은 곳에 본체 등의 유리가 덮인 것으로 추측됨. 신품 2대의 내부에 불을 붙혀 재현실험을 행한 바, 2대 모두 밑 부분에 구멍이 생겼고, 수지의 녹는 형태 및 그을음의 부착이 사고제품과는 달랐음. 사고제품은 외부의 발화에 의해 용융, 착화된 것으로 생각되어 팬히터로부터의 발화는 아닌 것으로 추정됨.

### 4. 결과

당 센터는 원인조사결과를 상담자에게 설명하고 납득시킴. 당 센터는 위로금에 의한 해결로 조정하고 상담자의 승낙을 받음.

## 믹서기 안전성 결여에 의한 어린이 상해배상 요구

### 1. 사건개요

2002. 9. 초등학교 1학년인 청구인 딸이 믹서기로 밀크쉐이크를 만들기 위해 본체에 칼날을 올려놓고 용기를 잡으려고 하던 중 갑자기 칼날이 회전하여 오른쪽 중지의 힘줄 2개가 끊어지고 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피해자는 사고 후 3주정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충격으로 불안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만삭이었던 청구인 처는 조기분만으로 산후조리원에서 약 2주간 산후조리를 하여야 했음.

청구인은 용기가 완전히 결합되지 않으면 칼날이 회전되지 않아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것은 제품 결함이라며 치료비 등 300만원을 배상해주도록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초등학생이 부모가 관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한 것은 사용자의 과실로 보아야 한다며 배상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임

동제품은 1998년 본원의 소비자안전국의 안전성 조사에서 용기가 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칼날이 회전하여 손가락이 절단되는 위험성이 있어 제조사에 자발적 리콜을 촉구하였던 제품으로 당시 제조사에서 기 유통된 제품에 대해 적극적으로 리콜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남.

### 2. 처리결과

피해배상 요구액 300만원 중 부모의 자녀 관리 소홀에 대한 과실을상계하여 치료비 120만원 및 위로금 80만원등 총 200만원을 배상함.

## 전기보온포트의 뜨거운 유출로 인한 화상 치료비 배상요구 건

### 1. 사건개요

2001. 1월 전기보온포트를 거실에 세요 놓고 사용하던 중 7개월 된 아이가 만지다 넘어져 뚜껑의 빈틈으로 뜨거운 물이 새어나와 아이가 피하지 못하고 데어 3도 화상에 가까운 심한화상을 입음. 피 청구인은 사용설명서에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도록 하라”는 주의사항이 명백히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은 전기보온포트는 실내에서 주로 사용하며 언제든지 넘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뜨거운 물이 새지 않도록 기밀성을 d지하여야 하나 뚜껑을 완전히 닫혔음에도 물이 새는 것을 제조상 결함이라고 주장함.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이 사건이 제품이 가정 내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어린이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충분히 안전선을 갖추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였다고 보아 제품교환 및 치료비 배상을 권고함.

### 2. 처리결과

20만원 상당의 고급제품으로 배상